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5
----------	-----

2023. 9. 19.(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23년 8월 29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 9월 7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가. 제안이유

-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기술자립화, 사업화촉진을 통해 안정적 국내 소부장 공급망을 구축하고 산업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 따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기술혁신 전문펀드(모펀드)가 출자한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주)K&투자파트너스가 결성하는 「케이앤 소부장 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를 위한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반영과 출자 여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자펀드 :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1) 출자 약정 총액 : 210억 원

2) 업무집행조합원 : (주)K&투자파트너스

3) 유한책임조합원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충청북도,
아이비케이지축은행(주), 산은캐피탈(주),
(주)엔캠, (주)에스비아이캐피탈

○ 출자대상 : (주)K&투자파트너스(대표 김철우)

○ 출자기간 : 3년(2023년 ~ 2025년)

*사업기간 : 8년(2023년 ~ 2031년)

○ 출자총액 : 50억 원(2023년 20억 원, 2024년 20억 원, 2025년 10억 원)

○ 최초출자기한 : 2023년 9월 30일

○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 : 아래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할 것

① 소부장특화단지 소재(예정)한 제조기업(본사·공장) 등에 약정
총액의 50% 이상 투자

※ 단, 충청북도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② 소부장산업 관련 제조기업 등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③ R&D 용도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④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집행금액의 80% 이상 투자

⑤ 충청북도 소재 기업에 20% 이상 투자

※ 상기 ①의 충북 소재 소부장 특화단지에 투자하는 금액까지 고려 시,
충북 기업에 총 40% 이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가. (필요성) 이 동의안은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안정적 국내 소부장 공급망 구축을 위한 펀드 출자를 하려는 것으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지원을 위해 출자의 필요성이 있음

나. (절차적 타당성)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여 의결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문제가 있음

앞으로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다. 다만, 이미 2022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50억 원 출자 의향을 전달하고, 2023년 4월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결성이 완료되어 출자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라. 동의안 제출의 절차적 문제와 동의안 내용의 부실함 등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출자 후 펀드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부’ 이행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마. 그 밖에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투자자산 회수, 리스크 관리 등 펀드 출자에 대한 향후 운용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375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29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기술자립화, 사업화촉진을 통해 안정적 국내 소부장 공급망을 구축하고 산업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 따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기술혁신전문펀드(모펀드)가 출자한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주)K&투자파트너스가 결성하는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를 위한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반영과 출자 여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자펀드 :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 출자 약정 총액 : 210억 원
 - 업무집행조합원 : (주)K&투자파트너스
 - 유한책임조합원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충청북도, 아이비케이저축은행(주), 산은캐피탈(주), (주)엔켐, (주)에스비아이캐피탈
- 출자대상 : (주)K&투자파트너스(대표 김철우)
- 출자기간 : 2023~2025(3년)
- 출자총액 : 50억 원(23년 20억, 24년 20억, 25년 10억 원)
- 최초출자기한 : 2023. 9. 30.

3. 참고사항

○ 추진경위

- (산업부)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21.2월 지정) 연계 펀드 출자 제안('22.3월)
- (우리도) 50억 원 출자 결정('22.5.22.) 후 산업부에 출자 의향 전달('22.5.23.)
- (산업부) 결성규모 및 모 펀드 출자금 확정 후 우리도 출자 재요청('22.7.28.)
- (우리도) 출자 방침 결정('22.8.9., 지사님 결재) 후 출자 의향 재전달('22.8.10.)
- (한국성장금융)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22.9.16.)
- (한국성장금융)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22.11.17.)
- (위탁운용사) '케이앤 소부장 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요청('23.2.13.)
- (우리도) '케이앤 소부장 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계획 보고('23.3.10.)
- (우리도) 2023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23.3.14.)
- (우리도) 2023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23.6.1.)

○ 주목적 투자분야 및 의무투자비율

- 아래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할 것

- ① 소부장특화단지 소재(예정)한 제조기업(본사·공장) 등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 단, 충청북도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제조기업 등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 ③ R&D 용도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 ④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집행금액의 80% 이상 투자
- ⑤ 충청북도 소재 기업에 20% 이상 투자. 상기 ①의 중복 소재 소부장 특화단지에 투자하는 금액까지 고려 시, 중복 기업에 총 40% 이상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19조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18조(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제19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